

International SOS는 우리가 이룩한 성실성과 사업적 성공에 대한 평판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판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이 행동강령은 모든 제공업체에 전달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International SOS는 모든 제공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공업체는 본 행동강령이 조직 내 전체에 전달되어 전 직원이 본 행동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OS는 제공업체와 비즈니스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으며 제공업체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우리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1. 부패방지 준법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나 기타 업체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세계 각국의 부패방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SOS 기업은 뇌물, 불법 리베이트 또는 기타 유사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금품과 관련한 우리의 윤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제공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부패 방지 관련 법, 규정 및 기준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의 모든 부패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무상의 행위에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사업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해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제안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2. 법률 준수

제공업체의 직원 및 업무절차는 각국의 법률과 기타 모든 현행 법규 및 기타 법률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에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모든 현행 국제통상규정 법률, 규정, 규제 및 기타 법률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OS 또는 International SOS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는 현행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관, 조직, 법인 또는 기업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3. 기밀/독점 정보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의 지적재산, 영업비밀 및 기타 기밀정보, 독점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International SOS와의 계약에 따른 경우 및 International SOS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의 영업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나 자료도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단, 해당 정보가 제공업체의 과실없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4.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를 대신하여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 접근, 사용 및 수정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또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 관련법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윤리적 거래

고객 및 제공업체와의 윤리적 거래는 건전한 비즈니스 관계에 필수적입니다. International SOS는 모든 제공업체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공업체의 신뢰성과 성실성은 물론이고 가격, 품질 및 서비스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송장, 대금결제 및 보고서는 상호 비즈니스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공업체는 이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수준의 윤리 기준을 보이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모든 비즈니스 거래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납품업체로 하여금 그들의 계약 의무 수행의 일환으로 본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개인이 본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또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이 있다면 똑같이 공개해야 합니다.

6. 돈세탁 및 금융 기록

제공업체는 돈세탁 활동 방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국제 법과 규정에 따라 금융 기록과 보고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7. 건강 및 안전

International SOS와 거래하는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의 기준에 준하는 정도로 건강 및 안전을 중시해야 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International SOS 시설에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 파견 근로자는 International SOS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OS는 제공업체가 마약, 음주 및 기타 금지 물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바랍니다.

8. 사업 지속 계획

제공업체는 자연재해, 질병, 전국적인 유행병, 범죄행위 등에 의해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제품과 서비스 납품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도 직원과 직원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다양성과 포용

제공업체는 포용적인 업무 환경을 장려하며 직원과 계약자의 다양성을 중요시 하고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성적 성향, 국적 또는 기타 차별적 요소와 관련하여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10. 현대판 노예제

제공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강제 노동, 담보 노동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노동은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 서류를(가령, 여권, 근로 허가서 또는 기타 모든 개인의 법적 문서)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근로자들이 채용 과정과 고용 기간 동안 일자리를 얻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의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근로자에게 적시에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차별, 정신적 및/또는 신체적 강압이 금지됩니다. 징계 정책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어떤 국가 또는 지방에서도 법적 고용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11. 환경에 대한 책임

제공업체는 모든 환경 관련 법,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잠재적인 환경 위험 요소를 확인하여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협력회사들이 납품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세계의 기후 보호 목적을 지지하고 환경 영향을 의식하여 지속 가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수 및 위반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에 제공하는 어떠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적이거나 기타 나쁜 평판 또는 International SOS에 부정적이거나 기타 나쁜 평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공업체와 관련된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한 경우 International SOS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자사의 직원과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 제공업체의 책임입니다.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위반의 심각성 및 상황에 따라 제공업체와 관계가 종료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

“International SOS”는 International SOS Pte. Ltd.와 이 회사의 계열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계열사”는 International SOS를 지배하거나 International SOS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International SOS의 일반적 지배 하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지배”는 계약이나 기타 방식으로 해당 사람이나 법인의 경영 및 정책을 감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의결권이나 기타 권리 또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자본금(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기타 지분) 중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강령”은 International SOS의 제공업체 행동강령을 의미합니다.

“제공업체”는 현재 및 미래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컨설턴트, 에이전트 및 기타 제공업체를 의미합니다.

행동강령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Compliance@internationalsos.com으로 연락주시십시오.

2019년 4월 4일 개정 2.0